

WE ARE YOUR DOL



근로기준과(Division of Labor Standards)

전자 고지 옵션

근로기준과(Division of Labor Standards)로부터 전자 고지를 수신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.

§ 33. 서비스 고지. 1. 기타 모든 법률, 규칙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, 위원장, 위원회 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누군가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때마다, 그러한 통지는 해당 인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, 이 섹션의 2항에 따라 전자 통신을 통해 그러한 당사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. 파트너십에 대한 고지는 파트너 중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고, 법인에 대한 고지는 그 임원이나 대리인에게 제공될 수 있고,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통지는 민사 관행법 및 규칙에 따라 또는 이 섹션의 2항에 따라 법인의 동의가 있는 전자 통신에 의해 소환장이 송달될 수 있는 구성원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. 법인에 대한 동의는 파트너, 임원, 대리인, 회원, 소유자 또는 기타 유사한 개인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부서의 명령이나 요구가 송달되어야 할 때마다, 해당 고지는 고지의 송달을 위해 이전에 이뤄졌던 방식으로, 그러한 명령 또는 요구의 영향을 받는 건물을 담당하는 적절한 연령과 재량의 당사자에게 전달함으로써, 이 섹션의 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득한 후 전자 통신을 통해, 또는 구내에 그 사본을 눈에 띄게 부착하여 담당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송달됩니다.

2.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, 개인 또는 단체는 가입 또는 등록이 자발적이고 이 섹션에 제공된 대로 계속해서 우편 또는 개인 서비스를 통해 고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통지 받았지만 대신 전자 통신으로만 고지를 수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경우 전자 통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날짜: _____

사업자/고객사 이름: _____

케이스 ID 번호(알고 있는 경우): _____

동의자 이름: _____

동의자 직책: _____

해당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십시오: 고용주 변호사 고용주 회계사

원고/청구인 변호사 기타: _____

고지 수신 이메일 주소: _____

뉴욕주 노동법 33절에 의거해, 본인은 근로기준과(Division of Labor Standards)의 고지를 전자적으로만 수신하도록 자발적으로 선택 및/또는 동의합니다.

동의자 서명: _____